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위험성평가 실시지침

제정 2023. 12. 12. 지침 제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실시 지침은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관련한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잠재된 위험요소 및 운전상의 문제점을 발견, 평가, 개선함으로써 귀중한 인명손실을 포함한 제반 사고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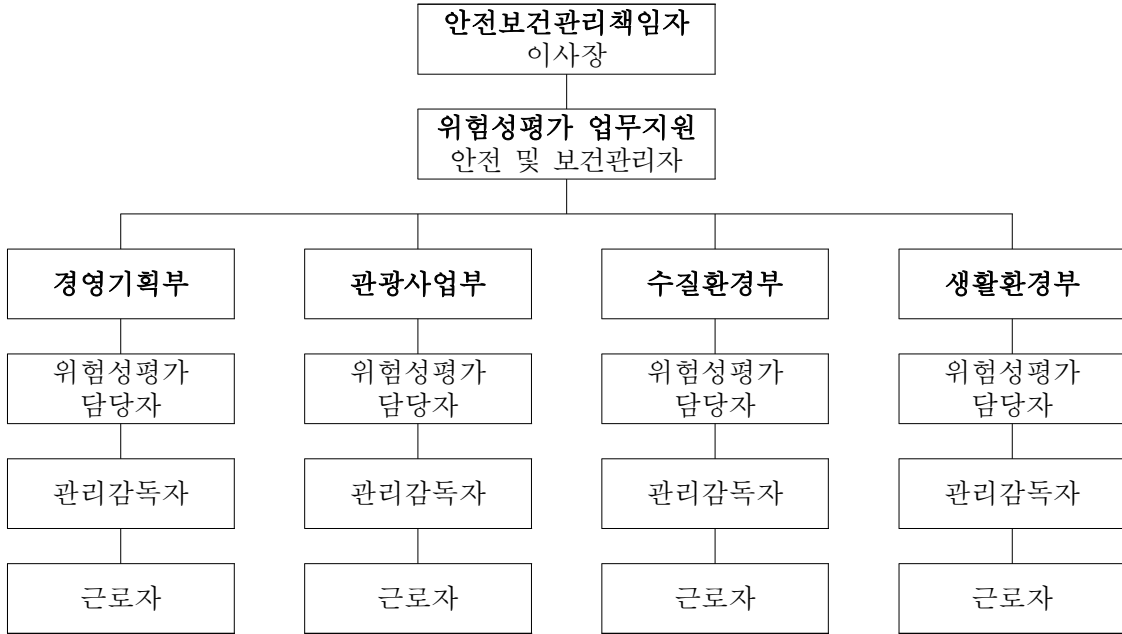
1.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3. "유해·위험요인 파악"이란 유해 및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4.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5.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험성 결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7.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록"이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9. 그 밖의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본 실시 지침은 공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실시 체제

제4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 <표1>과 같이 한다.

<표1> 위험성평가 조직



제5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 <표2> 와 같이 한다.

<표2>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이사장)	<u>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u> ○ 사업주의 의지 구현 -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 승인 - 실시계획서 작성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 구성원과 역할 부여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위험성평가 업무지원 (안전 및 보건관리자)	<u>위험성평가 업무지원</u> ○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 제정 및 개정 지원 ○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지원 ○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지원 ○ 위험성평가 업무 진행 관리 지원 ○ 사업장 순회 점검 사항 포함 관리
위험성평가 담당자 (각 부서 안전담당자)	<u>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u>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 위험성평가 실시 및 관리감독자 업무 보좌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안전, 보건 관리자의 사업장 순회 점검 사항 포함)
관리감독자 (각 부서 부서장 및 사업장 관리감독자)	<u>위험성평가 실시</u>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 (현업업무 근로자)	<u>위험성평가 참여</u>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할 경우 ○ 담당업무의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제3장 구분 및 시기

제6조(위험성평가 구분)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 상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제7조(실시시기)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는 다음과 같다.

- ① 최초 위험성평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 ② 정기 위험성평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1회/년)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1. 기계·기구, 설비등의 기관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③ 수시 위험성평가: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수시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발생
 -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④ 상시 위험성평가: 최초 평가 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 실시

제4장 위험성평가

제8조(평가대상)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1. 공단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모든 위험시설
- 2. 공단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 3.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 4.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제9조(실시방법) ①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주(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2.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조직을 구축한다.
- 3.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

성의 추정·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한다.

4.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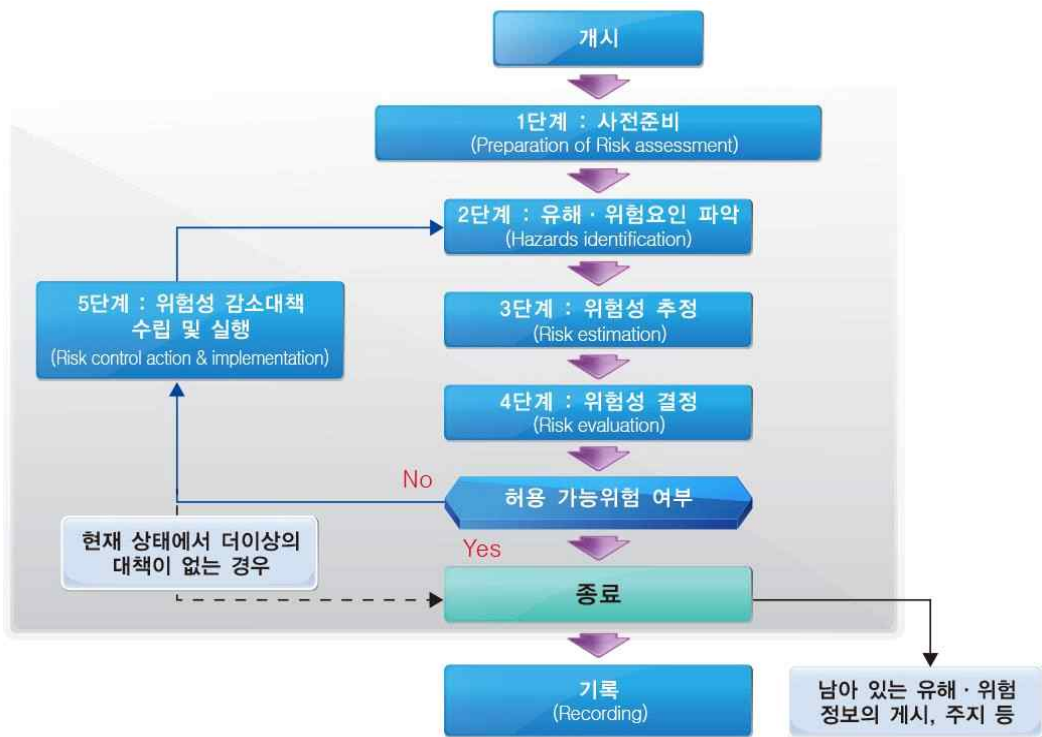
5.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6.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②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1>과 같이 한다.

<그림1> 위험성평가의 추진절차



① 1단계: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정확한 작업의 분류가 중요, 작업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②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 가장 중요한 단계,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③ 3단계: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표3>과 중대성<표4>을 곱하여 산출

$\text{위험성(Risk)} = \text{사고발생의 가능성} \times \text{사고결과의 중대성}$

<표3>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내용
상	높음	3	일반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
중	보통	2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하	낮음	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표4> 중대성(강도)

구분	가능성		내용
대	높음	3	사망·중대한 상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직업성 질병 초래 위험
중	보통	2	의학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해 또는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
소	낮음	1	아차사고, 무상해, 응급조치를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초래 위험

<표5>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	중대성(강도)		
	대(3)	중(2)	소(1)
상(3)	9	6	3
중(2)	6	4	2
하(1)	3	2	1

④ 4단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높음(6~9), 보통(3~4), 낮음(1~2)으로 구분
-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표6>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관리기준	개선방법
6 ~ 9	높음	즉시개선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
3 ~ 4	보통	개선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태
1 ~ 2	낮음	현상유지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이 필요한 상태

⑤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크기가 높음일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위험성 크기가 낮은 경우에는 현 작업상태를 유지하거나, 게시, 주지, 교육 등의 방법으로 조치

⑥ 6단계: 결과 기록 및 보존 [법정기한: 3년]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기록 및 보존
- 기록한 위험성평가표는 안전보건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

제5장 위험성평가 관리

제11조(주지방법) 사업주(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 추진목표 및 그 밖의 주지사항을 회의 또는 행사등에서 홍보·주지시키고, 읽을 수 있도록 공지한다.

제12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의 작성·관리) 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기록물을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제14조(검토 및 수정) ① 본 지침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현실을 반영한 형태로 효과적·효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야 한다.

- 도입목적, 공단의 안전보건수준의 향상, 사회의 가치관, 사회의 정세에 변화가 있을 경우

② 실시지침의 수정 검토는 관리감독자, 근로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등으로부터의 의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심의내용·결과 등을 참고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